

## 경 고 장

소	속	외서면행정복지센터
직 위 ( 급 )		외서면장
성 명		차 영 수
위반 및 처분내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5조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서는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외서면장은 2022년 소울푸드 페스티벌 축제 저잣거리 잔치마당 시상식에서 소속 공무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상식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이에, 「상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기관장 경고』 처분하오니, 직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8일

상 주 시

